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검토보고(역삼동 735-11호)

강남구 역삼동 735-11호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에
위락시설 입지심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2항 규정에 따라
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하고자 합니다.

□ 위락시설 입지심의(안)

구 분	변 경 내 용	
	변경 전	변경 후
건축물 용도	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	지하1층 위락시설(유흥음식점)

첨부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(안) 1부. 끝.

주무관 남명준 도시관리팀장 임태웅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도시환경국장 배경섭

부구청장 06/22
주윤중

협조자